

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</p> <p>① 일반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	<p>제4조의2 (청약의 철회)</p> <p>① <u>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</u> ----- ----- <u>바에 따릅니다.</u></p> <p>② ----- <u>채무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</u> ----- ----- <u>채무자의</u> -----.</p>	<p>자구수정</p>
<p>제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</p> <p>① 금융소비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4조의3 (위법계약 해지)</p> <p>① <u>채무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자구수정</p>
<p>제6조 (담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,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. “채무자 등”은 채무자, 설정자,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.</p>	<p>제6조 (담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근거법 변경에 따른 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(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 방식을 ----- ----- -----</p>	
<p>제7조 (연대보증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개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~ 나. (생략)</p> <p>2.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. ~ 마. (생략)</p> <p>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</p>	<p>제7조 (연대보증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< 삭제 ></p> <p>< 삭제 ></p> <p>< 삭제 ></p>	<p>금소법 시행에 따른 연대보증인 성립 가능 요건 반영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< 신 설 ></p>	<p><u>② 제1항의 약관변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, 제1항의 게시 외에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(제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약관 변경 직후) 서면, 전자우편(E-MAIL),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</p>	